합작투자 계약서

제1조(당사자)

이 게이 하는 대한민국(이라 "한국") 배를에 따라 설립되어 결속하신 주식되다 000 (이라 "강")과 이라 중국 배를에 따라 설립되어 결속하신 주식되다 000 (이라 "을") 사이에 체결하는 게이는이다.

제 2 조 (목적)

가능은 상국에서 00 을, 을은 마상중국에서 00 을 ማ위하고 있는 바, 야 당사자는 00 을 주목자으로 하는 회사를 상국 내에서 설팅하고자 하어, 기교는 을은 이 게이는데 된 상상 전기사항과 사호 야수들 아무네된 하어 다음과 같이 참여하고 그 중에도 이 게이는서를 자성하는 바이다.

제 3 조 (정의)

芝型 叶洲 如是芝加州时间 计是此 准色 纠漫 次之时。

- ①시입시다: 본 게이트 제 5 전의 소청 절차에 따라 본 게이트의 이름 당시하나 한국병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주식입시나 000 (이라 "시입시다"), 이징어로는 000 으로 제상되는 주식입시나
- ②性绝生 知时到什时时
- ③부숙구네야는 본 게야되나 관련하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본 게야 제 5 전에 의거하다 경과 을 및 신입사 간에 체결되는 게야
- ④구식: 본 게이트 제 5 간의 소청 내용에 따라 행하더지는 각 출자의 대가로 신화자의 발기인 멋 본 게이트의 당자자들에게 발행 교부되는 액턴, 보통, 의물권부 구식과 본 게이트 제 9 간에 의하거나 기타 다른 Ustile로 수지된 발행될 신화자의 모든 추가구식
- (5) Utaralizati: otzaket मंदे प्रच्यारिक, नाहरेषीर, नाहरेषीर, न्यंह, प्रच्याहरेगान
- 1. 위 기업들이 본 기에들의 하는 당사자의 에사선에에 관찬 특표권을 직접적이는 간접적이는 00% 에상 범유 또는 통제하는 덕유
- 2. 본 기에부의 이는 얼마당사자가 위 기업 등의 이사선에게 관한 투표권을 직접적이는 간접적이는 00% 이사 보유 또는 토제하는 기우
- 3. 제 3 $\frac{7}{2}$ 제 $\frac{1}{2}$ $\frac{1}{2}$

제 4 조 (정부의 인가)

- ①본 7에야 체결 즉시, 章은 章의 시회사 주식취득 및 관행 부속가에야데 따라 章이 시회사에 제공할 기술상의 청소에 관하여 외자도생병에 따른 하나와 그에 관행하여 외국환관회병상 요구되는 기타 하나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창국정부의 관행기관에 시청사를 제출하여야 샀다. 상기 하나 또는 승인에는 창국정부가 모든 생대장금, 호호토티(royalties), 이자지급, 구상생용, 출자회수금 및 본 7에야 및 제생산 부속기에야에 따른 章에 대한 기타 제생산지급금을 상기 제기에야되 유효 기간 중 章이 지정하는 외청중국 소재 음병에 외한호 환급, 오글하는 것을 보자 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찬다. 같은 章이 상기하나 또는 승인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창회적인 청소를 제공하어야 한다.
- ②본 게이부의 체결 즉시, 울은 본 게이부 또는 기타 제 나 부속게이부에 따라 울이 시회사에게 술 정보를 공기 및 사용 허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되었중국 수축규제병사 요구되는 제 및 허가 또는 기타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사를 준비, 제출하여나 한다.
- ③본 $^{\circ}$ 제 $^{\circ}$ 함 및 제 $^{\circ}$ 함에 규정된 신청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야당하자가 최선을 다하여 행정한다는 내용의 의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거에부는 보 $^{\circ}$ 제 $^{\circ}$ 함이 의한 모든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전적으로 외확정 및 조건부가에부터다.

제 5 조 (신회사의 설립)

- ① 발효일 이후 가능한 한 조속의 75과 울은 한국법에 따라 신입사가 열한 및 등기되도록 조치한다. 등기된 신입사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00 이다. 이름 당사자는 신입사의 열한 및 등기에 관했던 절차 및 당세에 대하여 사한 행악하고 행당하여이는 한다.
- ②시회사의 정관 및 에서회 규칙: 본조 제 1 함에 따라 시회사가 열행 및 등기된 기와 본 기에 등의 당사자들은 시회사가 본 기에 투서 별했 [1]의 정관 및 별쳤 [2]의 에서회 음덩규정을 체택하도록 조치하다이나 왔다.
- ③수건가본 및 납입자본: 본 조 제 1 함에 따라 신화사를 열할 및 등기한 때의 신화사의 수권자본은 00 원이며, 법입자본은 00 원이다.
- ④ 가고가 울의 둘자: 신입자의 심호 날에자본 중 가 및 가이 지치 보 발가에들은 신입자의 액턴 00 원의 보통 의결권부 주식 00 주를 받은 때가로 00 원의 보급통자를 하더니 된다. 울은 신입자의 액턴 00 원의 보통 의결권부 주식 00 주를 받은 때가로 00 원의 본급통자를 하더니 된다.
- ⑤ 달래내용: 제내는 시회사 '달래내용'은 시회사가 발생시키었거나 또는 부탁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 게이들의 당사자들의 균등부탁이다. 여행내용 및 법률내용을 포함하여 본게이는 체결시하지 각 당사자가 부탁하게 된 내용은 통 내용을 발생하지 않다자의 부탁으로 한다.

제6조(부속계약)

신회사의 설립등기자부 관기에 당사자들은 아래의 게이트를 체결하다며 한다.

- ปรุ่บา राधाराराय गर्ड्सपृत्रावाद् (License Agreement)
- @ १६२६ (१६५१२१६) च्युन्द्राच्याच्ये (Management Assistance Agreement)
- গ্রামান্য ইন্সালন্ (Distributorship Agreement)
- ঞ খ্যান প্রাধান্য রুবা খু বালায়ের Plant and Equipment Lease Agreement)
- ত্র এটার্বান্টার এটার এটার প্রান্ত (Personnel Transfer Agreement)
- ⑥ 시간시૧೬೬ ಕ್ಷಿಸ್ಟಲ ಸಕ್ಷಿಸ್ (Technical Assistance and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제 7조 (신회사의 경영)

- ①주주총회 및 의킬: 주주총회 작소는 한국 또는 이사회가 주주의 전원생체 대한동의를 받아 결정한 작소로 한다. 신회사의 정관 또는 한국법에 말된 규정된 거유를 제외하고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작업 또는 대회인에 의하여 총 생활성 주식의 과생수 이사를 보유한 주주들이 참서하고, 활성한 주주의 과생수의 산성투표로 체택된다. 천재 또는 작용에 법률이 의하여 허용되는 한, 주주는 주주총회개최대신에 대한동의로서 전한을 방사할 수 있다. 주주에 관한 기타 제생산사항은 신회사의 정관 또는 법률이 정하는 땅에 따른다.
- ②시회사의 이사회: 다른 법률의 규정이 때마나 시회사의 정관에 딸의 정해지지 아니하는 차, 시회사의 검증, 관회 및 통제에 관차 첫만은 시회사의 이사회에 귀속된다. 이사회는 첫번차 이사회의 결의, 정관과 법률의 규정내용에 따라 시회사의 때무지하면에 관차 전차을 시회사의 인재원에게 위인함 수 있다.
- 1. 신참사의 에서는 주주합니에서 선인된다. 신참사의 정관에는 00 때의 에서선에에 관한 규정을 두띠 신참사의 에서 중 00 때문 많이 지때당한 사람으로, 00 때문 을이 지때당한 사람으로 하기로 본 거에는 당사하는간에 아침에 하십시었다.
- 2. 시회사의 이사회는 시회사의 때 회가까지도 중 제어도 00 회 이사 개최되어 업무를 수행하더야 보다. 이사회 회의는 시회사의 사자 또는 이사회가는 지정하는 타 인지원 또는 이사가 소재했다. 그러나 강은 물이 이사회 회의 소재물 위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덕유에는 전제든지 시회사의 사자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전기와 같이 지정되고 강에 의하여 지정된 타 인지원 또는 이사가 이사회 회의를 소재하도록 조치를 것을 합의한다.
- 3. 본 게이부의 당사자들은 본 건 제 5 건 제 2 항 제 2 호에 따라 그들에 의하어 지명된 에서가 신회사의 정관, 본 게이부의 제 8 건, 에서회 윤덩규정 등에 따라 에서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을 에서회에 제출하도록 건체하어나 한다.
- ③如至이化: 如至이化는 00 0号 左上站 수 때에 이사입구성원 구에서 이사입가 다음절차에 따라 선생한다.

- 1. 본 게야의 당사자들은 위선 시회사의 에사회로 하더군 장에 제당하고, 을에 유민하는 1 인의 대표에서를 선명하도록 하더야 한다. 장이 대표에서를 제당하고 을의 유민을 받아야 한다.
- 2. 본 7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선물된 대표에서에 추가하며, 을은 현재라도 을에 의하여 제되되고 것이 통의하는 신화사의 에서움의 1 인을 제 2 대표에서 선물형 것을 요청할 권료을 갖는다. 을의 위와 같은 요청이 있는 거위 본 게이들의 당사자들은 즉시 신화사의 에서회로 하더군 위추가대표에서를 선임하도록 7시하더라 한다. 통 추가대표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더라 하더 신화사의 상근교통원 또는 인지원에서는 한다.

④117 以早117t

- 1. 본 간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 집에 지대하고 울이 통의한 때문에서서 신화사의 사자이 된다. 사자는 신화사의 수석인원의 덕활을 수행하다 에서화가 정하는 내에 따라 신화사의 열상업무를 집행하고 에서화 회의의 의자이 된다.
- 2) 신입사는 물에 의하다 제정되고 장이 통의하는 이사를 부사자으로 둘수 있다. 본 전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추가대표에서가 선인되는 점수 통대표에서가 부사자이 된다. 부사자는 신입사의 사자를 보자하고 사자 유고시 에서입 원의의 의자에 된다.
- ⑤ 걔나: 신입사는 강에 의하어 제정되고 원이 통의하는 법정걔나 00 떠올 두어야 샀다.
- ⑥이어, 대표이어 및 휴대전에에 관한 행된: 이 게이는의 각 당시하는 본 간에 규정된 자기적을 구비한 사람은 이어, 대표이어, 휴대로 전達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는 신입어의 주식에 따른 투표권을 행사하고 또한 자신에 의해 제정된 이어로 하여군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을 약속하다. 이어, 대표이어, 휴대가 사망, 행위무능적, 사업 기타의 사유로 인기통한전에 되었어졌을 거위에는 각 당시하는 본 간의 규정된 자기적을 구비한 사람들 그 후임사로 전불하기 위해 필요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또한 자신에 의해 제정된 이어로 하여군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 ① 到7·11712 吸到7·117\$单:
- 1. 십구에기간: 신입사의 십구에기간은 때전 1 월 1 일에 시작되어 그 해 12 월 31 일에 충돌랐다. 다만, 첫 십구에기간은 본 7에부서 제 5 조 제 1 함에 따라 신입사가 설정되는 놀에 시작되어 그 다음해 12 월 31 일에 충돌된다.
- 2. 김기지(부: 신입사는 본 항 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김기씨(무소에서 규정하는 산국내에서 열병하면을 인정된 김기씨관행, 기준, 절차에 따른 김기씨, 김김지(부학 그에 관련된 서류를 발유하다)이 산다.
- 3. 회에 12대 12대 회에 기계 12 중에 진회자는 그의 내용으로 각 당자자가 통의하는 분국공인회에서 자꾸소에서 그 회에 1개부 및 관련자 유를 감자 받아나는 한다. 이 공인회에서자무소는 각 당자자가 회에 보고 및 세공신교에 자용할 수 있는 회에 보고자를 자성하여 가 및 을에게 제출하여나 한다.
- 4. 보고 및 진회자 사휴에 대한 경자: 애 보낸의 기간의 응한 즉시 진회자는 한국어와 행은을 된 그 기간 통한의 대자대간도와 손에게시스다를 각 당사자에게 제출하어나 한다. 나아가 진회자는 각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각 당사자나 그 대회인이 열환할 수 있도록 회기계간부와 사휴를 본자에 비치하어나 한다.

제 8 조 (신회사의 사업)

- ①시회사의 덩띠목저: 시회사의 덩띠목저는 별채[1]로 이 게이투서에 채부된 정관 제[X]호에 규정된 띠뚜를 수행하는데 있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우선 열광소기에는 시회사가 별채[3]으로 본 게이투에 채부된 기술사용게이투에 따라 울보다 제공받은 기술에 따라 생사된 물건(이하 "제품")의 제조 및 판매띠뚜를 수행하는 것으로 샀다.
- ②제물의 판매: 신입사는 별채[5]로 이 게이부에 채부된 판매게이부에 따라 샀다네서는 제물을 끊이게만 판매하더야 하지, 끊은 신입사의 제물을 샀다네서 독재 판매값 Whit지인 권상을 가지다.
- ③제물의 수활: 당에게간에 특별히 달리 참의하지 않는 찬 신회에는 제물을 전 에게에수활 該 권리를 가진다. 다만, 수활찬 물량과 장에게 판매技 물량은 각 당에게가 형 의하여 결정한다.
- ④제물의 판매가기국: 본 건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경제제 판매하거나 수불될 제물의 가기국은 경, 을과 행의한 후 신회사가 결정한다. 다만, 그 가기국은 제물이 판매될 시장에서 경쟁됐을 갖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⑤ 기에당지: 아사자는 자신이나 또는 그 바그에 나가 본 간의 제통과 기에에 될 물들인지 또는 간에도 샀국 내에서 제안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 것에 도의샀다.
- ⑥시회사의 공처 및 시설: 강은 발체[6]으로 천부된 공자 및 시설라스가에부에 따라 00 에 위치한 그의 또는 이런구설과 시청사시설을 시회사에 되스카에이는 한다.

① 강은 빨친[7]으로 본 게이투서에 천부된 꽃업원 인게가에부에 따라 천자 강의 이건구설에 소오된 꽃업원 전원을 신입사에 인제났다.

제 9 조 (자금 조달)

②추가자본 잔닿 생생; 각 당사자는 당사자간에 의하여 건강하고 신중한 덕업과 방에 비추어 제 5 전에 따라 출자될 자본 외에 추가자본이 달라다고 결정할 때에는 경과 울은 각각 신회사의 자사에 대한 권리의 비홀에 따라 추가자본을 잔닿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가자본은 코곤으로 또는 당사자간에 창의된 검위에는 시장가가격에 따라 기계휴, 열비, 기울 혹은 기타의 물건으로 불자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이 불자된 검위에는, 당사자는 그 불자자본역에 상당하는 보통 • 의물권부 주식을 추가로 WH정받는 것으로 한다.

③을의 의무부단의 조건: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행당인 변경에 의하여 될요한 정부의 인가, 하가, 승인 등을 청소로 받지 아니하거나 고경을 받을 때 하지는 울은 신입사에 대하여 보장, 대어, 추가자본의 조절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울은 이러한 승인 등을 여러 위해 참대한의 노력을 하더아 한다. 만열 물이 이러한 승인들 연지 못하고 따라서 보장, 대어, 추가자본의 법부에 관한 자기의 의무분을 이렇지 못한 겨우에는 각 당사자는 다음단기의 조치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청의하어나 한다. 다만, 이 겨우에 잡은 보장, 대어 또는 추가자본에 관한 자기의 의무분을 이행할 의무를 부었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주식의 양도)

① 야도 등의 얼반적 제상: 본 간에서 행색히 딸리 규정된 검수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신화자의 주식 또는 신화자에 대한 신구인수권을 배도, 처분, 당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생생으로 그 덩리나 권회를 야도하거나 그 주식장에 다른 권회의 열정 및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오거나 가지를 우리가 있는 행위를 하더시는 아니었다. 다만, 이러한 제상은 강 또는 을의 전 제사는 혹은 대부분의 제사는에 일반적인 당보나 부당이 열정되는 것을 금제하는 취계는 아니다.

- 1. 문서로 된 개절의 의사문지의 발송 또는
- 2. 이건한 청하는의 도달아왔부터 00 얼의 당과

③ 배수청이들에 대한 불승낙 또는 대접: 완영 전 제 2 항의 배수청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다 생대비는 당사자가 제절하거나 기간내에 승낙을 하지 아니라 지수에는 청이들자는 00 일간의 기간통안 상대비는 당사자에게 제시한 가기적이상으로 또한 그와 같은 조건으로 그 주식이나 나머지 주식에 대하 제 3 자에게 배수청이들을 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본 항에 따른 제 3 자에 대한 주식에 대하 제 3 자에게 배수청이들을 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본 항에 따른 제 3 자에 대한 자기 3 자에게 배수청이들을 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본 항에 다른 제 3 자에 대한 신회사 주식의 이름되는 이 기에는 및 이 기에는 데 따라 체기불된 (또는 이 기에는의 기업적인 이행을 위해 이름되었는 대한, 본 하에 다른 제 3 자에 대한 신회사 주식의 이름되는 이 기에는 및 이 기에는 데 따라 체기불된 (또는 이 기에는의 기업적인 이행을 위해 이름되었는 됐는다. 만난 체기불합) 타 기에는데 규정된 이름되었으로 모든 의무를 제 3 자에 무 또한 인수들 전신이 이어나 하다, 그러한 인수는 문서로 이루어지에는 있다. 만난 이름되었는지 아니하는 지수 또는 처음 상대비를 당시하게 제시한 내용된다 낮은 가기적이나 다른 조건으로 제 3 자에게 배도하려고 하는 지수에는 이름되었는 때 장사자에게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청이들을 하나이는 있다.

④ 얼반 요건으로서의 정부하다: 본 간의 규정에 따른 신회사의 주식의 야토 얼방 이건에 야토망시자 또는 얼방 당사자는 이러분 야토와 그에 관련된 항위, 거에 등등에 달요한 정부의 하다를 신청하여 받아나 한다.

⑤ 얼마한 정부하다를 받지 못한 '당우의 혼과는 본 건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정부의 하다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 해당주식을 제 3 자에게 아토하거나 또는 청약자가 다른 방법으로 주식의 소유명의나 주식에 대한 권화를 때도, 야토, 대보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규정된 내에 따라 정부의 처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으로부터 00 일 이내에 취가가 나지 않는 건무, 청이들인이 그때에도 그 주시(그에 판하시지 수선 배수청이는 떳 승낙이 이루어지신)의 처분을 원충 건수에는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값 그 주식을 문장하는 주랜의 자기취득, 소가 및 그에 따른 신입사의 당시자본 경순를 모았하다 그 주식의 불자자에 대한 사한에 필요한 또는 필요한 결치를 가구하더니 한다. 이러한 주식의 상환시기기는, 관련 법당에 의거하다, 청이들인이 배도청이들지 상대병당 당사자에게 제시합 가기의를 했다.

⑥주식대도에 따른 의무의 제상: 본 거이부에 당사자가 본 거이부의 규정에 따라 신환사 주식전체를 배도, 기타 처분하거나 설팅 상 신환사 주식전체를 배도 기타 처분하는 것과 통일찬 결과를 생기에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 거이부에 떠킹박히 빨리 규정되어 잊지 아니하는 찬 통 당사자의 본 거이부사의 의무와 첫억은 홍된된다.

제 11 조 (지급 및 조세)

①지금내병 및 지금자소: 본 7세부 및 부속기에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정되고 있는 각확성의 및 거리시의 결과에 또는 그와 관련하여 시회사가 불에게 행하는 열체의 지금(UHI당근, 호호티, 이자지급, 구상내용, 출자회수근 등을 포함하나 이에 찾아지 않는다)은 그 게이부상에 딸히 규정하는 덕용을 제외하고는 덕용에 따라 대대대로 울이 시회사에 대전으로 지정하는 내에 따라 샀국의 원화 또는 외창중국 딸리환로서 산국 또는 외창중국에 있는 근행 또는 다른 주소에서 지급하는 내식으로 행한다.

②원천지수: 北국세병자 울에게 지급될 공액에 대하다 시회사가 원천지수하다나 할 세금은 시회사가 왈부터 원천지수하다나 즉시 관창세투양국에 납부하다. 또한 게이투양사자들은 시회사로 하더군 의 원천지수 세액과 관련하다 울이 외향국국 소득세에 대하 외국법부세액의 공제를 받음에 있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한국 세투양국 발행의 법제될 영수등 또는 기타 전절한 증거를 울에게 제공되도록 한다.

제 12 조 (기밀보장)

①기밀보자의무: 부속기에야하에 의하다 시회사에 기밀을 제공할 수 있는 기위를 제외하고는 이 기에야의 당사자들은 타비, 당사자 혹은 시회사에 의해서 기밀로 지정된, 타비, 당사자 혹은 시회사로부터 작은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어 보다. 이를 위하어 그러분 기밀정보의 모든 기록, 사본, 복사 선택에는 네밀물건임을 나타내어 응인되지 않는 사용이나 복사를 내지하기 위한 데생범한 문사를 하어야 했다.

②사용제상: 부속기에부에 떠갈히 규정된 US법에 따라 행하는 덕유를 제외하고는 야당 사자는 타US 당사자나 신회사호부터 전은 기탈정보를 어끄킨 목저숙 위하시고 사용하지 인숙 것에 합의상다.

③의무의 제상 및 같속: 본 건데 의상 당사자들의 의무는 이 제야이 갖힌된 후 00 년간 같습하던 당사자를 구속한다. 다만, 그러산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거나 제 3 의 특성된 불처호부터 전은 것인 TIF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 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①거네야기간: 이 게이야는 신입시나가 해시는되거나 기타 특징된 설치되서 곤속하지 아니하거나 본 전 제 2 항 소정의 사유로 이 게이야이 충전되는 더유를 제외하고는 발효얼로부터 무기한 곤속한다.

② 거미부의 충현사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보호시험했을 때에는 게이부는 충현하다. 다만 아커 제 3호 및 제 4호의 기위에 있어서 게이부위보는 또는 위법생태에 있지 양수 열병 당사자는 시전에 의한 통제로서 타병당사자 소유주식을, 관한 법정에 의거하여, 독행적인 평가기간이 정한 공정한 가기적 또는 이루당사자가간에 합의된 가기적에 매일하거나 시회사의 최사건절차를 발을 수 있는 전략적은 보유한다. 아커 제 1호 및 제 2호의 기위에 이루당사자는 법이 처음하는 내에 따라 시회사와 하나가 불한 취하기로 한다. 아커 제 5호의 기위에는 이루당사자는 보유주식을 열병당자자 또는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시회사의 최사건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 1. 이는 엘리당시에는 채무호과로 인값 지불불능, 이는 엘리당시에는 스스로가 파시스(청울 하거나 전지(천당을 인청했을 때, 또는 이는 엘리당시에는 사람이 00 일 이내에 기간되지 않았을 때
- 2. 어느 얼마당시하나 체권자 일부의 이야을 위해 제시는의 야동 등의 사해성의를 찾을때 또는 해시는되거나 청사는되었을 때(다만, 타비능 당사하의 하는지점인 기업체로 볼 때에얼마당사자의 이 기에야 및 부속기에야사의 의무이행능점에 대신 중대신 역효과를 마치지 않으며, 또 타비송당사자에게 중대신 술체를 제신 청도로 일비당사자의 성기적을 내건되시되지 않는 흡수하여, 시설할다니, Spin-off, 또는 이와 유사선 조재선기의 기상에는 제외성나).
- 3. 어느 얼마당아사자가 본 게이는 또는 부속기이는을 웨바라고, 그러한 웨바이 본 게이는 또는 부속게이는들의 이번 및 신화사의 성공적인 활동에 중요한

야당향을 가지오다, 또 게야위(나에 관찬 서전통제를 받은 후 00 얼 동안 당해 게야위(나에 대한 아무현 구제)조치도 당구되지 않는 채로 그대로 내치된 대

- 4. 이 게이는 또는 부속기에 나라 어느 얼마당하다가의 의무의 이렇 또는 급전의 수행이 탓에 웨버릴 때
- 5. 신입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하다 이동당사자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한 의견 차이를 해결치 못한 주주확인 또는 이사입가 있은 얼굴부터[90 일] 내에 이동당사자 간의 성실한 현사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아니랑 때
- ③권리 및 의무의 존속: 본 7세6투이 여전대한 원인에 의하여 충환된다고 하더라도 7세6투양한당시에 이외 발생하거나 7세6투양한이전의 작의 또는 부자위와 관련하여 7세6투양한 이후에 발생되는 7세6투양차사의 의무는 여성통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어때한 7세6투양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7세6부의 다른 부분에서 7세6투양한에도 불구하고 존속향 전환 제생하 선전된 7세6투양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아무런 여성통을 받지 아니라다.

제 14 조 (해석)

- ① 宝州村: 01 7/10年4 龍村, 付礼, 및 이번의 문제는 문국의 법률에 의하다 批析된다.
- ② 데이: 본 게이는은 呵에 및 산국에 두 가지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때문 게이는서와 국문제이는서 간에 차이전이 있거나 또는, 충돌하는 전이 있을 때는 데게나 때문론이 우선한다.
- ③ 중제: 이 게이트으로부터, 이 게이트과 관련하다 또는 이 게이트의 불이하므로 딸미없다 당시하는 당시하는 모든 분기성, 또한 의견하다는 때문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대문사가중제원의 중제중시에 따라 중제에 의하다 심흥제으로 해결한다. 중제에(둘)에 의하다 내려지는 판정은 심흥제인 것으로 당시자 사내에 대하다 구속한을 가지나.
- ④ 제목의 의미: 제 3 간의 것을 제외하고는 본 제약의 간 및 함에 붙어 있는 제목은 오르지 차간의 판의를 위한 것으로 이 제약의 얼부를 검접하지는 아니하다 게이부의 화당에 하등의 팽당을 마치지 아니라다.
- ⑤ 건데부의 수정 등: 이건 건데부는 이 참자투자와 관련하여 건데부터 가내부당사자간에 이루어지고 완전했으로 구두의 것이든 고 반대의 것이든 이건 건데부터 결 이건에 건데부터 구대부당사자 보건 이 건 건데부터 시킬과 통시에 사건에 이루어지고 위 현정 또는 참의들에 우선하다 또한 이 건 건데부터 취임과 통시에 사건에 이루어지고 위 현정 또는 참의는 필데되었다. 건데부의 일반당사자들부터 구두열면 또는 구두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이 건 건데부의 의미 또는 해석이 반건되지는 아니라다. 건데부의 이루어지라를 부터 정당하게 수권 받은 자들에 의하여 시앤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한 건데부의 수정, 변건, 추가는 건데부당사자들에 따하여 아무한 호텔 또는 구열될을 갖지 아니라다.
- ⑥불된기: 행시전이든 목시전이든 건데야당상사자가 이 게이듯상의 어때산 권리를 된기하거나 타내 당사자의 건데야불이병 또는 게이듯위반에 대한 권리형사를 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게이듯상의 다른 권리 또는 타내 당사자의 또 다른 게이듯불이형 또는 게이듯위반에 대한 권리형사의 된기가 되거나 된기로 간주되지 아니랐다. 이러한 채서권천칙은 이미 된기한 제아득상의 제대한 권리 또는 예대한 기에야불이병, 게이듯위반에 대한 권리와 이 게이듯상의 다른 권리 또는 다른 게이듯불이형, 게이듯위반에 대한 권리가 유사한 것인가에 대부를 가리지 아니라고 전통된다.

제 15조 (잡칙)

- ① 아동도: 이 거네야 및 이 거네야 부산의 모든 권한 및 의무는 대한적 성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 당사자의 사건 시대견통의가 없는 첫 제 3 차에게 아동도될 수 없다. 다만, 거네야 당사자는 제 10 건의 규정에 따라서 시회사의 모든 주식을 이전하거나 실정 상 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를 낡과 관련하여 또는 어때한 기업에 자신의 모든 자신 또는 실정상의 모든 자신을 야동하거나 이동모인인 거네야 당사자가 된했던 하ば에 있어서 곤속하거나 신경되는 회사에 자신이 이건되는 것과 관련 하나 당사자의 사건통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거네야 을 아동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아동도는 아동모인인 거네야 당사자의 가세하는 아동모인이 거네야 당사자의 가세하는 아동모인이 가네야 나가가 게 아무를 아동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아동도는 아동모인이 기네야 하나고 하더라 가네야 하는 한 사건이 한 모든 아동모인이 기네야 하나 가네야 하는 사건이 가네야 하나 가네야 하는 사건이 그러나 이 아동도는 아동모인이 기네야 하나 가네야 하나 가네야 하는 것이 가네야 하는 것이 되었다.
- ②불가항된: 기비투의 일반하다자는 파데, 독, 독, 학자, 독발, 천재지반, 정부의 조치 또는 당사자의 합의적 통제법을 덮는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하다 타내다다가 먹어나 있는 일체의 술일, 사해, 지인, 술해 또는 기타 다른 사고에 대하다 아무런 첫만을 부탁하지 아니하고, 기비투 당사자가 이 기비투자의 의무를 이렇게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있어 지체를 하였다 하다라도 그것이 위의 원인 중 하나 또는 그 이사의 원인 때문에 성기 것일 때에는 이불 이 기비투의 위반으로 보지 아니하다.
- ③ 게이는건함의 독행: 이 게이는의 어느 잔건 또는 전함이 어때보는 이유로 무효, 위법 또는 재생불능은 이 게이는의 다른 잔건 또는 전함에 대하어는 아무현 덕병을 마치지 아니찬다. 이 더유에 그 잔건 또는 전함은 무효, 위법 또는 재생물들으로 판단되는 참도 안에서 이 게이는 속에 된참되지 않았던 것으로

洲红红叶.

④통지: 이 게이두에서 딸리 저하고 있는 거부를 제외하고, 이 제우다 요구하게나 낡동되는 일체의 통지는 시호인호 행해제이는 하다기, 등기항공수되므로 방송하다 수시에 보하다 확인되어야는 합니에 의하다 방송되었 통지로서 유효하고 충분하다.

제 16 조 (특약사항)

사하기 가게하는 이렇지난지나하는 이번	네데 아내 내용을 특하다하으로 저하다	기, 얼시난지나하고나 특이득지나하이 사충	되는 기우에는 특야다하운 우선하여 개	将하도록 산다.
•				
②				
3				

제 17 조 (별첨)

1	١.	7	12	۲

- 3. 이사 회문 덩규정
- 3. 71安什多7~110年
- 4. ではなななから
- 5. 世知知時
- 6. 是社 实 社的这个知時
- 7. 见到时初知時
- 8. 7多时初分時

이사의 증거되어, 각 게야당자자는 에사신의 수이를 받는 후, 각 정망하게 수권받은 자들로 하더글 이 게야되어의 모두에 기재된 열차에 이 게야다.

년 월 일

갑	주소		
H	상호명	대표자명	(인)
을	주소		
三	상호명	대표자명	(인)